

삼척시 개발촉진지구지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154
----------	-----

발의년월일 : 1995. 3.

발의자 : 신상균 의원 외 12인

1. 주 문

우리 삼척시는 분리된지 9년 만인 올해 역사적으로 재통합된 도농복합형 도시로써, 다소 번악한 시세를 다시 하나된 10만 전시민이 합심 회복하여 명실상부한 강원 남부의 중주도시로써 세개화와 지방화시대의 선진 삼척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동해의 청정 해역과 천연동굴 고원지역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의 90%가 산악지대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나, 정부의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지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도개지역은 '88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시행후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어, 당시 41,000여명의 광산인구가 '95년 현재 23,000명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경제는 화생의 기미를 찾아 볼수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민간단체 주관으로 도개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 석공 도개 광업소의 특자경영과 무인탄 소비처 확보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농공단지조성사업,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3월초 인근 고한·사북지역의 주민 권리대회를 계기로 다행스럽게도 「사북 고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탄광지역을 개발 촉진지구로 조기 지정」하고, 「태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을 제정키로 발표한 정부의 탄광지역 대책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지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에는 읍면지역이 통합이전의 상황에 대비, 행·제정상 「불이익 배제원칙」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개발촉진지구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와같이, 도개 탄광지역의 회생과 낙후된 읍면 오지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도개지역은 도시기반시설과 대체 산업육성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하장면의 땃재와 육백산이 연개되는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관광조건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가능토록 하여 고 부가가치의 고원 관광지 조성만이 침체된 탄광지역을 회생시킬 물론,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로 갈수 있는 첨경임을 인식하시고, 도개와 하장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삼척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견의합니다.

2. 제안이유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우리시 일부 지역을 정부에서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극히 제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세계화에 부응한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또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개발촉진지구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지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의 미이행을 조속 이행토록 정부 및 관련부처에 긴의 촉구코자 함.